

금천 에코·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2387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4년 3월 개관예정인 금천 에코·에너지센터(금하마을)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 및 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,
- 나.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하여 지역에너지 사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 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시설 : 금천 에코·에너지센터

명칭	설치 장소	시설규모	개관시기(예정)	비고
금천 에코·에너지센터	금하로1다길 12 (독산동 1118-7)	연면적 478.95㎡ (대지면적 342.5㎡)	'24년 3월	

나. 위탁개요

-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
- 위탁내용 : 금천 에코·에너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 -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민협력사업 지원
 - 지역에너지 교육, 홍보 지원 및 관리
 - 신재생에너지의 이용, 보급 사업 지원 및 관리 등

- 3) 위탁방법 : 수탁운영자 공개모집
- 4) 운영비 : 292백만원(구비)

3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가.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
- 나. 지역 에너지 사업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민간 중간지원 조직 역할 필요
- 다. 지역 에너지사업 활동을 연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 필요

4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가. 에너지절약, 지역에너지 사업 홍보,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,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- 나.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의 지역 보급 활동을 지원하고,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·운영이 가능하며, 외부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폭넓은 운영이 가능함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
 -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4조
 - 에너지법 제4조

관 련 근 거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<개정 2016.7.18.>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[본조신설 2020.7.17]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

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,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,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관 련 근 거

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

제4조(구의 책무)

-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구는 학교·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·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관 련 근 거

에너지법

[시행 2023. 4. 19.] [법률 제19000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,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의 생산·전환·수송·저장·이용 등의 안전성,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6. 8.]